

제 617 호
1977. 8. 17

발행인: 서울특별시경 구 자 춘
편집: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시 보

차 례

| | |
|--|----|
| ◎ 조 칙 | |
| 제 1179 호: 서울특별시 자용차운송사업체 기업화 추진에 따른 위촉제 과제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 | 3 |
| ◎ 규 칙 | |
| 제 1712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 | 3 |
| ◎ 고 시 | |
| 제 26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 8 |
| 제 261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 10 |
| 제 262 호: 도시계획 미관지구 일부변경결정 | 11 |
| 제 26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 12 |
| 제 264 호: 도시계획시설(2층기및오물처리장)결정및지적승인 | 13 |
| 제 26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14 |
| 제 267 호: 도시계획시설(공유구)결정 및 지적승인 | 14 |
| 제 26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인가 | 14 |
| 제 26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 15 |
| 제 27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 16 |
| 제 27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지적승인 | 16 |
| 제 272 호: 도시계획시설(유류업무설비)결정및지적승인 | 17 |
| 제 273 호: 출장소 및 동청사위치변경고시 | 17 |

(이면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897

| | |
|---|----|
| 제 274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 18 |
| 제 275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 18 |
| 제 27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및하수도) 결정및지적승인 | 19 |
| 제 27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 19 |
| 제 278 호 : 도시계획시설 (수도) 시행허가 | 20 |
| 제 279 호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지적승인 | 21 |
| 제 28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 21 |
| 제 28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 | 22 |
| 제 28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 22 |
| ◎ 공 고 | |
| 제 18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 23 |
| 제 182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공고 | 24 |
| 제 184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공고 | 24 |
| 제 185 호 :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실시계획 공람공고 | 25 |
| 제 18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 25 |
| 제 18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 26 |
| 제 189 호 :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 | 27 |
| 제 19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 27 |
| 제 19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 30 |
| 제 193 호 : 환지계획 변경공람공고 | 32 |
| 제 37 호 (종로구공고)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회계관계 공무원직인신조 공고 | 32 |
| 제 372 호 (중구공고) : 공인신조 공고 | 33 |
| 제 288 호 (성북구공고) : 직인신조 공고 | 34 |
| 제 31 호 (서대문구공고)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공인 (신조사용) 공고 | 34 |
| 제 26 호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공고) : 부정시험 행위자 명단 | 35 |
| ◎ 사 명 | 35 |
| ◎ 정 정 | 37 |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송사업체 기업화추진에 따른
취득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8월 17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179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송사업체기업화
추진에 따른 취득세과세 면제
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송사업체 기업
화추진에 따른 취득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였거나
면제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 종
전의 예에 의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공무원제안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8월 17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712호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법 제 78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한다) 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제발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
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
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무원제안
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 1. "제안"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의
도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
의 효율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
다.
- 2. "참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 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
한다.

| | |
|--|--|
| <p>②제 1 항 제 1 호의 "제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유제안"이라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라함은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직무제안"이라함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소속기관 의장이 추천한 고안을 말한다. <p>제 3 조 (제안으로 볼수 없는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있는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실제로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제안심사 위원회에서 정한 것 <p>제 4 조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 5 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관장한다.</p> <p>②시장은 구청장에게 제 1 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 6 조 (의견조회)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제 1 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 2 장 제안심사위원회</p> <p>제 7 조 (설치) 이 규칙에 의한 제안의 심사, 채택, 시상, 실시, 평가, 상여금</p> |
|--|--|

지급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예 제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 둔다.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제1부 시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제 9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시상
- 2. 창의의 실시범위, 실시기관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 3. 창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 4. 상여금의 지급

5. 기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 11 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 경우에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제 1부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규정을,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
|--|--|
| <p>③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착안의 실시, 평가에 관 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 <p>제 18 조 (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 17 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 1 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 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p> |
| <p>④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p>제 4 장 심 사 제 19 조 (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 여 심사한다.</p> |
| <p>제 14 조 (간사와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 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 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p> | <p>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p> |
| <p>제 15 조 (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p>②제 1 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p> |
| <p>제 16 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 는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p> | <p>1. 노력도 2. 완성도</p> |
| <p>제 3 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 17 조 (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 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외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 출한다.</p> | <p>제 20 조 (조사, 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p> |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 21 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소득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 4 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 5 장 시 상

제 22 조 (창안상) ①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안상을 수여하되, 그 종류는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한다.

②제 1 항의 각상에 상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상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서울특별시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 23 조 (인사상의 특전) ①시장은 창안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 조제 3 항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2)시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당자의 수와 순위를 정하고 특별승진 또는 승급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 조 (부상) 시장은 제 22 조의 창안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금상은 1 창안당 60 만원이상 200 만원이하
- 2. 은상은 1 창안당 40 만원이상 60 만원미만
- 3. 동상은 1 창안당 20 만원이상 40 만원미만

4. 장려상은 1창안당 2만원이상
20만원미만

제 6 장 권리의 승계

제 25 조 (권리의 승계) 서울특별시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 26 조 (승계의 결정) ①시장은 창안으
로서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소유장은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그 통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그
소유장으로부터 제 26 조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소유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유장은 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8 조 (출원) 제 27 조의 규정에 위하
여 권리를 양도받은 (인계, 양여포
함) 시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

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출원된 창안의처리) 제 28
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서울
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것으로
보고, 동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창안의 실시 및 평가

제 30 조 (창안의 실시) ①시장은 제
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에는 관계기관의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시
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
용을 수정, 보완하게 할 수 있
다.

| | |
|---|--|
| <p>(2) 제 1 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3)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 32 조 (실시의추천) ①시장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p> <p>②제 1 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자치단체나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의 모집한 제안중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택, 실시된 경우에는 시장은 제안자에 이 규칙이 정하는 특전(시장, 특별승진, 승급, 상여금, 지급등)을 줄 수 있다.</p> <p>제 33 조 (실시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장은 시장이 결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p> | <p>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보 칙</p> <p>제 34 조 (보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농무원 수당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p> <p>제 35 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 36 조 (위인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서울특별시 제안규정은(훈령 제 359 호 72.8.11)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p> <p>(3) 이 규칙 시행전 승진 규정에 의하여 평가수에 있는 제안및 상안은 이규칙에의한 제안및 창안으로 본다.</p> |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60 호

제목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영등포구청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 ('77.3.16) 규정 및 77.5.1자 서울특별시 내부위임 사항에 의거 이른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조서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7. .

서울특별시장

| 구분 | 등급 | 유별 | 폭원 | 연 장 | 시 절 | 총 점 | 비 고 |
|----|----|----|-----|-------|------------|-----------|--------|
| 기정 | 소크 | 1 | 10m | 100 m | 신도림 907-35 | 신길동 448-8 | 위치일부변경 |
| 변경 | " | " | " | " | " | 신도림 908-2 | |
| 기정 | " | 2 | 8m | 90 m | 구로 607-4 | 구로 620-2 | 위치일부변경 |
| 변경 | " | " | " | " | " | "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61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5 호 ('77.4.14)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8.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192 외 4 필지 11 필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 신일중, 고등학교 교지 조정

| | |
|---|---|
| <p>3. 사업의 시행면적 : 23,378 평방미터 (7,072 평)</p> <p>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193 외 9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이봉수</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p> | <p>가. 사업의 착수일 : 시행허가일</p> <p>나. 준공예정일 : 1977.10.31</p> <p>6.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명세 : 별첨. 별첨도면과 같음(도면생략)</p> |
|---|---|

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권리명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 | 적 | 소 유 권 |
|------------|---------|-----|-----------|---------|-----------|
| 도봉구 미아동 | 산2 | 임야 | *4,290 평중 | 2,713 평 | 학교법인 신일학원 |
| | 산3 - 2 | " | 1,140 " | 626 " | " |
| | 산4 - 1 | " | 1,918 " | 819 " | " |
| | 산4 - 2 | " | | 62 " | " |
| | 산5 | " | 1,170 " | 521 " | " |
| | 산7 - 1 | " | 660 " | 147.6 " | " |
| | 149 - 2 | 대 | | 187 " | " |
| | 147 | " | 131 " | 64 " | " |
| | 163 - 6 | " | | 311 " | " |
| | 163 - 7 | " | | 574 " | " |
| | 192 - 4 | " | | 967 " | " |
| | 195 - 1 | 도로 | | 80 " | " |
| 계 | | | | 7,072 " | |

◎ 서울특별시고시제 262 호

도시계획미관지구일부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미관지구들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 ('77. 3.16)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1977. 8. 2.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서울특별시장

가. 미관지구 일부변경 결정조서

| 구분 | 순위 | 지구명 | 종별 | 기 점 | 종 점 | 연장(m) | 비 고 |
|----|----|--------|----|-----------|-----------|-------|-----------|
| 기정 | 26 | 노선미관지구 | 2종 | 동 교 동 | 수 색 동 | 5,400 | 도로양측12m |
| 변경 | 26 | " | " | 남가좌동(사천교) | " | 4,330 | 1,070m 축소 |
| 기정 | 34 | " | 4종 | 연 대 입 구 | 연대입차교차 | 1,200 | 도로양측12m |
| 변경 | 34 | " | " | " | 남가좌동(사천교) | 2,270 | 1,070m 연장 |

* 별첨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6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8. 2.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서

| 구분 | 등급 | 류번 | 목원 | 연 장 | 시 점 | 종 점 | 비 고 |
|----|----|----|----|-----|--------------|--------------|-----|
| 신설 | 소로 | 3 | 6 | 40 | 신당 5동 287-30 | 신당 5동 286-41 | |
| " | " | " | " | 50 | " 287-4 | " 286-28 |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 서울특별시고시제 264 호
 도시계획시설 (쓰레기및오물
 처리장)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
 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 ('77. 3. 16) 의 권한

○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시 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1977. 8. 3.
 서울특별시장

| 구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신설 | 쓰레기및오물처리장 | 마포구상안동482일대 (남지도) | 878,270 평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끝.

◎ 서울특별시고시제 26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 3. 16) 의 권한 위임사항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도로결정조서

2. 관계도시 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1977. 8. 4.
 서울특별시장

| 구분 | 종급 | 류번호 | 번호 | 폭원 | 연장 | 시 점 | 종 점 | 비고 |
|----|----|-----|----|----|-----|-----------|------------|----|
| 신설 | 소로 | 3 | | 6m | 20m | 미아동 829-2 | 수유동 482-10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끝.

| | |
|--|--|
| <p>◎ 서울특별시고시제 267 호 도시계획시설 (공동구) 결정 및 지 적 승 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동구)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 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 3. 16) 와 권한위임위탁에 0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p> | <p>관한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 8. 4.</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 구분 | 시설명 | 위 취 | 규 모 | 비 고 |
|----|-----|----------------|-------------------|---------------------|
| 신설 | 공동구 | 중구서소문동 58-9 일대 | B = 2.2m, L = 40m | 중앙일보, 동양방송지 하공작물 |

| | |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끝. | |
| <p>◎ 서울특별시고시제 268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인가</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125 호 (77. 4. 27) 로 시설결정 및 고시제 193 호 (77. 6. 11) 로 지정 승인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 3. 2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p> | <p>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 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지 : 강남구 가락동 58 의 1 의 3 필지</p> <p>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명칭 : 중학교 신설</p> <p>3. 사업규모 및 면적 : 5,120 평</p> <p>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사업실시계획인가즉시 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 년</p> |

| | |
|---|---|
|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p> | <p>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생략</p> <p>8. 위치도 : 도면생략.</p> |
|---|---|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비고 |
|--------|------|-----|----------------------|---------------|
| 강남구가락동 | 58-1 | 대 | 11,416.96평중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 " | 58-3 | 대 | 4,390.62평 614.38평 | " |
| " | 56-4 | 도 | 113평 | 서울특별시 |
| " | 54-3 | 도 | 2평 | " |
| " | 개 | 4필지 | 5,120평 | |

| | |
|--|--|
|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9 호</p> <p>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p> <p>1. 건설부 고시 제 136 호 (62.12.20)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p> <p>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p> <p>3. 관계도서는 준토구청 도목과에</p> | <p>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7.8.3</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장</p> <p>1. 사업시행의 위치 : 중학동 도로 (한국일보사 뒤)</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중학동도로 확장공사</p> <p>3. 사업규모 : [폭=중학동도로 확장공사 연장=5m ~ 10m 도로 확장 290</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p> <p>5.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1977.9.1 ~ 1977.12.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토지조사서</p> |
|--|--|

◎ 서울특별시고시제 27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177 호 (62.2.9)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 및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8.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 위치 : 마포구 공덕동 438-2 ~ 용산구 원효로1가 25-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덕동 ~ 원효로1가간 도로개설공사

○ 도로지적승인조서

3. 사업규모 : 폭=28 m
 연장=1,47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6.11.3 ~ 1977.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서

◎ 서울특별시고시제 27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광장)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137 호 (77.7.9) 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41 호 (77.3.16) 관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8.8
 서울특별시장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 점 | 종 점 | 비 고 |
|----|----|----|----|-----|------------|-----------|--------------------------|
| 광로 | | 35 | 40 | 140 | 반포동 271-49 | 반포동 365-7 | 총연장 : 6,600m 중 일부 구간지적승인 |

| ○ 광장지적승인조서 | | | | |
|------------|-----|------------|--------|----|
| 구분 | 번호 | 위치 | 면적 | 비고 |
| 교통광장 | 104 | 반포동 363 일대 | 6,050㎡ | |
| | 106 | 반포동 226 일대 | 5,540㎡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72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을 다음과 같이 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및 제13조 규결과 건설부고시제 41호

(77.3.16)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8.9
서울특별시장

○ 유통업무설비결정 및 지적승인

|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 기정 | 경인화물자동차정류장 | 영등포구 당산동2가 47-2외 4필지 | 16,024.8 | |
| 변경 | 유통업무설비 | 영등포구 당산동2가 47-2 일대 | 약 20,524 | 증 12,500㎡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73호

출장소및 동청사위치변경고시
서울특별시 일부 출장소및 동청사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고시한다.

1977.8
서울특별시장 구 자 승

다 음

| 출장소및동명 | 위치 | | 이전일자 |
|--------|----------------|---------------------------|---------|
| | 이전 | 후 | |
| 양서 출장소 | 영등포구 동촌동 산2-14 | 영등포구 화곡동 1-103 | 77.8.16 |
| 동촌동사무소 | 영등포구 동촌동 397-6 | 영등포구 동촌동 산 2-14 (구 양서출장소) | 77.8.16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4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시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사가. 시장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8.9
 서울특별시 시장

|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 신설 | 시장 | 마포구 성산동 35-30 | 369평 | 성산주택지상가시장 |
| " | " | 중구 충무로3가 60-1 | 584.2평 | 일신아케이트시장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폐지 및 신설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
 0 도로조서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8.9
 서울특별시 시장

| 구분 | 등급 | 유별 | 폭 원 | 연 장 | 시 점 | 종 점 | 비 고 |
|----|----|----|------|---------|--------|----------|------|
| 거점 | 대로 | 3 | 25 m | 4,800 m | 대방동 | 서울대앞광장 | 노선축조 |
| 변경 | " | 3 | " | 1,920 m | " | 신림동 89번지 | |
| 신설 | 중로 | 3 | 12 m | 3,000 m | 신림동 56 | 서울대앞광장 | |
| " | " | 3 | " | " | " 427 | "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7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및하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6. 9.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기점 | 종점 | 비고 |
|----|----|----|-----|-----------------|------------------|-------------|------------|------------|
| 신설 | 중로 | 2 | 148 | 15 ^m | 236 ^m | 담십리동 12-203 | 담십리동 19-19 | 전농천·북계도로신설 |

나. 하수도결정조서

| 구분 | 시설명 | 규모 | 연장 | 기점 | 종점 | 비고 |
|----|-----|--------|-------|-------------|------------|-----|
| 신설 | 하수도 | B=8m | 390m | 장안동 244 | 담십리동 19-19 | 전농천 |
| " | " | B=5 | 370 | 담십리동 12-203 | 담십리동 21-8 | " |
| " | " | B=5.75 | 1,008 | 영등포5가 65 | 당산동 560 | " |
| " | " | B=10.2 | 2,000 | 중곡동 137-13 | 중곡동 125-10 | 중곡천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7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하

였고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의 권한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8. 10

서울특별시장

• 도로결정 및 변경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시 점 | 중 점 | 비고 |
|----|----|----|----|----|-----|------------|----------|------|
| 예지 | 소로 | 3 | | 6 | 58 | 대흥동 6번지 | 대흥동 6번지 | |
| 신설 | " | 2 | | 8 | 285 | 염리동 36-249 | 대흥동 4-3 | |
| 기정 | " | 4 | | 4 | 36 | 송정동 50-6 | 송정동 50-7 | |
| 변경 | " | 4 | | 4 | 36 | " | " | 위치변경 |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78 호

1977. 8. 11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수도)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71 호 (77.7.7)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조 (77.3.10)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 171 호 (77.7.21) 는 본 고시로 대체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부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주) 위커힐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성동구광장동 산 12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수도) (위커힐 전용수도)
3. 사업시행면적 : 906 평
4.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동 산 21번지 (주) 위커힐 대표이사 신 광 굴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시행허가일
 나. 준공예정일 : 77.11

| | | | | | | | |
|---|----------|--|----------------|---------------|-----|----------|-----------|
| <p>•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권리명세</p> | | | | | |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 | |
| 성동구 광장동 | 산 12 | 임 | 906 평 | (수) 워커히대표 신광균 | | | |
| <p>※ 별첨: 도면표시와 같은. (도면생략)</p> | | | | | | | |
| <p>◎ 서울특별시공고제 279 호</p> <p>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255 호 (77.7.28) 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을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p> | | <p>(77.3.16)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77. 8. 12</p> <p>서울특별시장</p> | | | | | |
| <p>•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지적승인조서</p> | | | | | | | |
|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 |
| 신설 | 운동장(정구장) | 관악구신림동 10-5외 31필지 | 9,506㎡(2,876평) | | | | |
| <p>※ 별첨: 도면표시와 같은. (도면생략)</p> | | | | | | | |
| <p>◎ 서울특별시고시제 280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266 호 (77.8.4)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p> | | <p>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77. 8. 16</p> <p>서울특별시장</p> | | | | | |
| <p>• 조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p> | | | | | |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 | 시점 | 종점 |
| 신설 | 소로 | 3 | | 6m | 20m | 미아 829-2 | 수유 482-16 |
| <p>※ 별첨: 도면도서와 같은 (도면생략)</p> | | | | | | | |

◎서울특별시고시제 281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변경

- 1. 서울특별시고시 제117호(77.4.21)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변경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77.3.1)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8. 17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성동구중곡동 176-1의 7 필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신설(국민학교)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35,888(10,858평) 진입도로 폭 10 . 연장 168
- 4. 변경전 : 사업시행자 . 주소 . 성명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산 18-2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백경순
변경후 : 사업시행자 . 주소 . 성명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학교육감
하 점 생
- 5.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당초 : 허가일로부터 4 개월

- 나. 연기(변경) : 허가일로부터 1년
- 6.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권명세 (변동없음)
- 7. 사업승제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117호(77.4.21)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사항 및 조건내용 일체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82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60호(76.10.5)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하였기 이에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선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8. 8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선대문구홍계동산 1의 40의 1 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운동장 확장
- 다. 사업시행면적 : 1,680 평

| | |
|---|---|
|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주 일이내 | ○ 준공년월일 - 77.11.30일 마.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유권 권리명세 |
|---|---|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권 |
|----|---------|-------|----|---------|-----------|
| 1 | 서대문구홍제동 | 산1외40 | 임야 | 780평 | 학교법인 문명학원 |
| 2 | " | " 45 | " | 900 " | " " |
| 계 | | | | 1,680 " | |

공 고

별첨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18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86호(75.6.11)로 고시된 구기동지내 하천복개및 도로개설공사 구간내에 저촉 편인 되는 토지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행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8. 5.
서울특별시
공 략 개 요
1. 사업장위치 : 신영동 36의 1 - 구기동 85간
2. 사업의종류및명칭 : 구기동지내 하천복개 및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안거 (B=3.2 . H=2.2) L=116미터의 4층 도로 B=8미터~12미터 L=450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1977.6.13~
1977.8.23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
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
한 판재인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2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 165 호 (77. 7. 16) 로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한 영동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들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공고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жалов한다. .

1977. 8.

서울특별시 장

(환지에정지변경지정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 2 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30,098.8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230
이 5호의 205 필지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4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 151 호 (77.7.5) 로 환지계획변경공람 공고한 영동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에정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 규정에 의거 환지에정지들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 변경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 공고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жалов한다. .

1977. 8.

서울특별시 장

(환지예정지변경지정내역)

- 가. 사업명 : 영등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변경면적 : 63,470 평
-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삼성동 65외 1호외 81필지

○ 서울특별시공고제185 호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실시계획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25 호 (77.7.13) 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도시가스 공장지대) 건설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과에 비치하고 표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 8.16

서울특별시강

<공람개요>

- 1. 사업시행의 위치 : 영등포구 연창동 20, 목동 15-6 부근 (김포 토지구획정리지구 546 구획).
-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사업

- 3. 사업의 규모 : 25,747
-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착공 : 77. 9. 1
준공 : 77. 9.30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 끝

○ 서울특별시공고제187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2 호 (77. 5.18)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 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및 동법 제 4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동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1977. 8.16

서울특별시강

1. 사업시행지 : 서울시 도봉구 월계동 811의1외 17필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영광여승상업고등학교
3. 허가년월일 : 서울시 고시 제 152 호 (77. 5.18)
4. 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35-1 학교법인영광학원 이사장 홍인옥
5. 시행면적 : 31,137 (㎡)
(9,419 평)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가. 착수년월일 : 77. 5.18
나. 준공년월일 : 77. 6.29
7. 준공도면 :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188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0 호 (76.12.27)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 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및 같은 법 제 4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 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동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8.1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동 103-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신경여자고등학교
3. 허가년월일 : 서울시 고시 제 350 호 (76.12.27)
4. 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동 103-1 학교법인 선덕학원 이사장 이윤성
5. 시행면적 : 4,200 평방미터
6. 사업착수 및 준공일
가. 착수년월일 : 77. 1.26
나. 준공년월일 : 77. 5. 2
7. 준공도면 :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189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 (아파트지구) 중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합니다.

2.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시경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도 서류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77. 8.

서울특별시장

(환지계획변경내역)

가. 사업명 :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위치 : 강남구 도곡동 125의

53호의 14필지

· 변경면적 : 2,039.5평

○ 서울특별시공고제 191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공 랑 공 고

1. 건설부고시 제78호 (72.3.6) 로 고시된 창전동 10-2 ~ 창전동 1150-2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내에 저축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의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

| | |
|---|--|
| <p>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 8. 17</p> <p><공람개요></p> <p>1. 사업장위치 : 마포구 창천동 10-2 ~ 창천동 150-2 간</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로개설 (봉원천도로 개수공사)</p> | <p>3. 사업의 규모 : 가. 폭 : 20-38 m 나. 연장 : 880 m</p> <p>4. 사업의 시행자 : 마포구청</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7. 9. 5 ~ 77. 12. 31</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p> |
| <p>토 지 조 서</p> | |

| 순위 | 위 치 | 지목 | 지적 | 소 유 자 | |
|----|--------------|----|-----|------------------|---------|
| | | | | 주 소 | 성 명 |
| 1 | 마포구창천동 145-5 | 계 | 2 | 마포구창천동 324 | 유 지 승 |
| 2 | " 145-4 | 계 | 1 | " | " |
| 3 | " 13-14 | 대 | 33 | 영등포구노량진동 225-90 | 서 용 찬 |
| 4 | " 13-1 | 대 | 69 | 종로구명륜동 1 가 36-44 | 김 용 구 |
| 5 | " 8-8 | 대 | 53 | 마포구창천동 8-4 | 이 종 대 |
| 6 | " 8-7 | 대 | 18 | 서대문구북아현동산 1 | 정 준 삼 |
| 7 | " 8-6 | 대 | 48 | 성북구 동소문동 1 가 183 | 박회자의 1인 |
| 8 | " 7-6 | 대 | 7 | 마포구창천동 7-1 | 박 인 태 |
| 9 | 마포구신수동 65-1 | 대 | 58 | 화성군미도면석교산 3-3 | 미 도 학 원 |
| 10 | " 65-2 | 대 | 196 | " | " |
| 11 | " 65-3 | 대 | 73 | " | " |
| 12 | " 68-1 | 대 | 2 | 마포구신수동 67-1 | 이 영 호 |

| 순위 | 위 치 | 지목 | 지적 | 소 유 자 | |
|----|-------------|----|-------|----------------|---------|
| | | | | 주 소 | 성 명 |
| 13 | 마포구신수동 68-5 | 대 | 40 | 마포구홍은동 11-6 | 최 주 랑 |
| 14 | " 68-8 | 대 | 6 | 마포구신수동 67-1 | 이 영 호 |
| 15 | " 68-3 | 대 | 1 | " | " |
| 16 | " 68-19 | 대 | 6 | " | " |
| 17 | " 103-1 | 전 | 3 | 충주시충소동 87 | 이 한 중 |
| 18 | 마포구구수동 56-2 | 전 | 6 | 종로구돈암농산 48-27 | 이성숙외 2인 |
| 19 | 마포구신수동 66-7 | 대 | 43 | 마포구신수동 66-1 | 방경길외 4인 |
| 20 | " 66-11 | 대 | 74 | " | " |
| 21 | 마포구창전동 8-3 | 대 | 80 | 성북구동소문동 1가 182 | 박희자외 1인 |
| 계 | | | 819 평 | | |

건 물 조 성

| No | 위 치 | 구 조 | 건 평 | 소 유 자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1 | 마포구창전동 13-14 | 연와조, 평옥계 세멘부목크 세멘와즙 | 1층 | 4 | 창전동 13-14 | 서 용 찬 |
| | | | 2층 | 3 | | |
| | | | 지하 | 3 | | |
| | | | | 4 | | |
| 2 | " 8-4 | 세멘벽돌, 세멘와즙 | 1 | 창전동 8-4 | 이 중 대 | |
| 3 | " 8-3 | 목조와즙 | 25 | " 8-1 | 박 희 자 | |
| 4 | " 7-1 | 연와조, 세멘와즙 | 7 | 외정부가로동 336 | 권 오 주 | |
| 계 | | | 47 |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207 호 (76.8.28) 로 고시된 창전동 5-2 ~ 창전동 5-92 간 도로 개설공사 구간내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 8. 17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1. 사업장위치 : 마포구 창전동 5-2 ~ 창전동 5-92 간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로개설 (서강 아파트 ~ 봉원천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폭 : 15 나. 연장 : 324
4. 사업의 시행자 : 마포구청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7. 9. 5 ~ 7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토 지 조 서

| No | 위 치 | 지 목 | 지 적 | 소 유 자 | |
|----|-----------|-----|-----|------------|-------|
| | | | | 주 소 | 성 명 |
| 1 | 창전동 2-108 | 대 | 17 | 창전동 2-108 | 이 봉 기 |
| 2 | 2-135 | " | 21 | " 2-24 | 정 호 회 |
| 3 | 2-134 | " | 51 | 노고산동 57-49 | 권 혁 입 |
| 4 | 2-123 | " | 3 | 북아현동 105 | 임 승 일 |
| 5 | 2-133 | " | 5 | 창전동 2-23 | 정 영 표 |

| No | 위 치 | 지 목 | 지 적 | 소 유 자 | |
|----|-----------|-----|------|-------------|----------|
| | | | | 주 소 | 성 명 |
| 6 | 창건동 2-132 | 전 | 25 | 창건동 2-113 | 신 상 식 |
| 7 | " 2-56 | " | 22 | 40-10 | 고 계 립 |
| 8 | " 2-131 | 대 | 7 | 2-114 | 서 수 자 |
| 9 | " 2-130 | " | 0.9 | 2-95 | 권 규 원 |
| 10 | " 2-129 | " | 4 | 2-5 | 장 원 모 |
| 11 | " 2-128 | " | 0.9 | 연태동 30-4 | 박 하 열 |
| 12 | " 2-101 | 전 | 6 | 창건동 2-5 | 장 원 모 |
| 13 | " 2-127 | 대 | 4 | " 2-21 | 구 병 립 |
| 14 | " 2-55 | 도 | 21 | " | " |
| 15 | " 2-100 | 전 | 4 | " 산1-4 | 김 형 순 |
| 16 | " 2-54 | " | 761. | " 산1-4 | 김계집이흥장동중 |
| 17 | " 3-5 | 대 | 225 | 금호동 4가 1134 | 박 영 구 |
| 18 | " 3-8 | " | 123 | " | " |
| 19 | " 5-10 | " | 299 | 충경로 3가 31-7 | 정 경 남 |
| 20 | " 5-128 | 전 | 295 | 창건동 28-1 | 임 경 옥 |

건 물 조 서

| No | 위 치 | 구 조 | 진 평 | 소 유 자 | |
|----|-----------|---------|------------|------------|-------|
| | | | | 주 소 | 성 명 |
| 1 | 창건동 2-108 | 연의조세면의집 | 1층10 | 창건동 2-108 | 이 봉 희 |
| 2 | " 2-104 | " | 19.88 | " 2-104 | 정 호 희 |
| 3 | " 2-123 | 연의조경유계 | 1층3 2층3 | " 2-123 | 정 봉 전 |
| 4 | " 2-105 | 연의조세면의집 | 23.56 | 노고산동 57-49 | 권 력 입 |

| No | 위 치 | 구 조 | 건 명 | 소 유 자 | |
|----|-----------|--------|-----|-----------|-----|
| | | | | 주 소 | 성 명 |
| 5 | 창건동 2-113 | 연와조명옥개 | 12 | 창건동 2-113 | 신상식 |
| 6 | 2-114 | " | 2 | " 2-114 | 서수자 |
| 7 | 창건동산 1-4 | 목조화집 | 17 | " 2-54 | 김정화 |
| 8 | 3-71 | 세멘스라브 | 1 | " 3-71 | 김영욱 |
| 9 | 5-12 | " | 1 | 원효로1가 86 | 장영석 |

◎서울특별시공고제 193 호

환지계획변경 공람 공고

- 영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환지에정지(아파트지구)중 일부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본 공고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서류송달 될 것이나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8.

서울특별시장

(환지계획변경내역)

가. 사업명: 영동제2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 나. 변경위치: 강남구압구정동 165번지의 105필지
- 다. 변경면적: 38,733.4평

◎서울특별시중로구공고제 37 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회계관계
공무원직인신조공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행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신조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함.

19 . . .

중로구청장 노건일

- 공인명: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로구출납명령관인
- 서체및규격: 한글전서체 (가로) 2.0cm 정방형
- 사용일자 4. 공인 1977.8.1 모형



- 1. 공인명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중구출납공무원인
- 2. 서체및규격 : 한글전서체 (가로) 1.8cm 정방형
- 3. 사용개시일자 : 1977.8.1
- 4. 공인모형



◎ 서울특별시 중구공고제 372 호

공 인 신 조 공 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시행에 따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구출납명령관인
 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구출납공무원일을 조각하고 1977년 8월 1일부
 터 사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구출납명령관인
- 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구출납공무원인



◎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제 288 호

직 인 신 조 공 고

성북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신조하였기 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함.

1977년 8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9

- 1. 공 인 명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성북구출납명령관인
- 2. 공인사용일자 : 1977. 8. 1
- 3. 공인의 모형



- 1. 공 인 명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성북구출납공무원 (신)
- 2. 공인사용일자 : 1977.8.1
- 3. 공인의 모형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제 31 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공인 (신조사용)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서대문구회계관계공인을 신조 사용케 되었기 공고함.

1977. 8. 1

서 대 문 구 청 장

- 1. 사용개시일자 : 77. 8. 1 00:00
- 2. 인 명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서대문구출납명령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서대문구출납
공 무 원



◎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6 호
 부정시험행위자명단

당시가 77.7.31시행한 제 5회 5급을류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다음 자 들은 부정행위자로 적발 되었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5 조 제 1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하고 시험시행일로 부터 향후 5년간(1977.7.31-1982.7.30)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는 사법 시험령에 의한 시험과 기타 지방 또는 국가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 하였음을 공고한다.

1977. 8. 1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응시자격 정지처분자

| 시험일시 | 응시번호 | 생년월일 | 성명 | 본적 | 주소 | 비고 |
|----------------------------|---------------|----------------------------------|-----|---------------------------|--------------------|-------------------|
| 77.7.31 11:00- 12:40 | 5급행정 S 688 | 52.1.19 (520119- 1896318) | 김민식 | 경남 창원군 창녕읍 퇴천 리 389 | 서울 성동구 성내동 6번지 | 부정 지 달 전 |
| " | 5급행정 S 696 | 49.11.14 (491114- 1787615) | 전원찬 | 경북 영천군 금호읍 교대 리 351 | 서울 강남구 반포동 50-2 | " |

사 령

◎ 1977. 7. 14

보건에방과 지방간호
 기 관 조 직 유 복 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인함.

종로구 지방행정
 사무관 조완희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

중 구 지방행정 김용수
 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안의수
 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 | |
|--|--|
| <p>등대문보전소 지 방 행 정 사 조규철</p> | <p>◎ 1977. 8. 1</p> |
|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건책에 처함.</p> | <p>건축지도과 지 방 전 축 보 심판종 지방건축기사에 임함.</p> |
| <p>중로구보전소 지 방 행 정 사 박찬갑</p> | <p>건축지도과 근무를 명함.</p> |
|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건책에 처함.</p> | <p>서울운동장 지 방 행 정 관 정만호 지방서기관에 임함.</p> |
| <p>지하철본부 지 방 행 정 사 박건영</p> | <p>서울운동장장에 보함.</p> |
|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건책에 처함.</p> | <p>보건연구소 지 방 보 건 관 김종석 노동청 진출을 명함.</p> |
| <p>중 구 지 방 행 정 사 박새환</p> | <p></p> |
|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건책에 처함.</p> | <p>◎ 1977. 8. 3</p> |
| <p>중로구보전소 지 방 행 정 사 윤수홍</p> | <p>비상계회 별 정 직 안영걸 보좌관 3 을 상 당</p> |
|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건책에 처함.</p> | <p>지방사무관에 임함. 8호봉을 급함.</p> |
| <p>총 무 과 지 방 행 정 사 김관희</p> | <p>강남구 근무를 명함.</p> |
|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 <p>지하철본부 지 방 전 기 정 서인원 건설부 진출을 명함.</p> |

| 정 정 | | |
|------------------|---|---|
| 정정사항 | 오 | 정 |
| 시보 609호 P62-4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조례 부칙중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정원중 증진 전보등을 한 후 이조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직급의 정원에 대하여는 이조례 시행 또는 적용일로부터 180일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3) (경과조치) 아조례 시행 당시의 현원중 증진, 전보등을 한 후 이조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직급의 현원에 대하여는 이조례 시행 또는 적용일로부터 180일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은 고용원정원 범위내에서 현원이 결원될때까지로 한다」 |
| P62-3 | 제 4 조중 「지방의무기감」 | 「지방의무부기감」 |
| P62-7 | 별표 2 중 「영등포병원과 동부병원 사이줄」을 | 삭제 |
| P62-12 | 7 쪽 4 줄 「도시개발자로요원 2」 | 도시개발자로요원 1」 |
| P62-16 | 1 쪽 「차량기술원 2」 | 「사방기술원 2」 |
| | | |